

束草市廢棄物管理法및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
法律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4. 11. 30.

산 업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 11월 28일 속초시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94. 11. 30)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업무남)

가. 제안이유

- 현행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이 모법에 따라 개별조례로 산재되어 있어 위반자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 쓰레기투기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일원화 시킴으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시(안제4조)
 -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일반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일반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금액 : 100만원 이하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없 음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7조 과태료 수납부를 '5년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에서 5년간으로 국한 시킨 이유?	○ 모든 세금의 시효가 5년인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에 명확한 근거를 정하고자 명시하였음.
○ 별표1의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선 및 두가지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되었을때 처리방법 ?	○ 과태료 상한선은 100만원 이하이며, 각각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경우 과태료 합계액은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임.
○ 비고2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에서 최근 1년간의 범위는 ?	○ 회계년도 1년의 개념이 아니라, 365일을 의미함.

5. 討論 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3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다. 수정 주요골자

- 제6조(강제징수)에서 "지방세법 체납처분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로 "강제 징수한다."를 "이를 징수한다."로 하고
-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서 "기록하고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 제8조(준용)에서 "속초시세 조례를 준용한다."를 "속초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로 자구 수정

7.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첨 부 : 1.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束草市廢棄物管理法및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
違反者에對한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1994. 11. 30.

산 업 위 원 회

1. 修正理由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2. 修正主要骨子

- 제6조 (강제징수) 에서 "지방세법 체납처분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로 "강제 징수한다."를 "이를 징수한다."로 하고
-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에서 "기록하고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 제8조 (준용) 에서 "속초시세 조례를 준용한다."를 "속초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로 자구 수정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u>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u>	제6조(강제징수) 지방세 체납처분의 이를 징수한다.	제6조(강제징수)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8호 서식에 의하여 <u>기록하고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u>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준용)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속초시 세 조례를 준용한다.</u>	제8조(준용) 속초시 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별표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5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 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5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 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500	750	1,000
	2.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제15조제2항)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정한 분리배출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나. 쓰레기 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한 경우 (매 회마다)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4.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17조제4항)	500	700	1,0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0	500	1,000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5항)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목욕장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 터키 탕, 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500	3,000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 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2항)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비고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제 호

수 신 :

제 목 :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
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
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숙 초 시 정 인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수납은행 :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인

영 수 필 통 지 서

(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수납은행 :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숙 초 시 정
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 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은행 :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380mm×180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지 제3호 서식]

(갑)

(처분기관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 × 118mm
(인쇄용지 | 특급 | 34g/m²)

(을)

(피처분서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거한 것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속 초 시 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지 먹지를 부착인쇄

○ 2,3번의 밑줄친 부분은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지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속 초 시 장 (인)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지,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지 먹지를 부착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정)

(개인동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지 먹지를 부착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무)

(시 통보용)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납제도장	속 주 시 장 귀 하
--------	-------------

168mm × 118mm
(인쇄용지 | 특급 | 34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 기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 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 (변 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속 초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